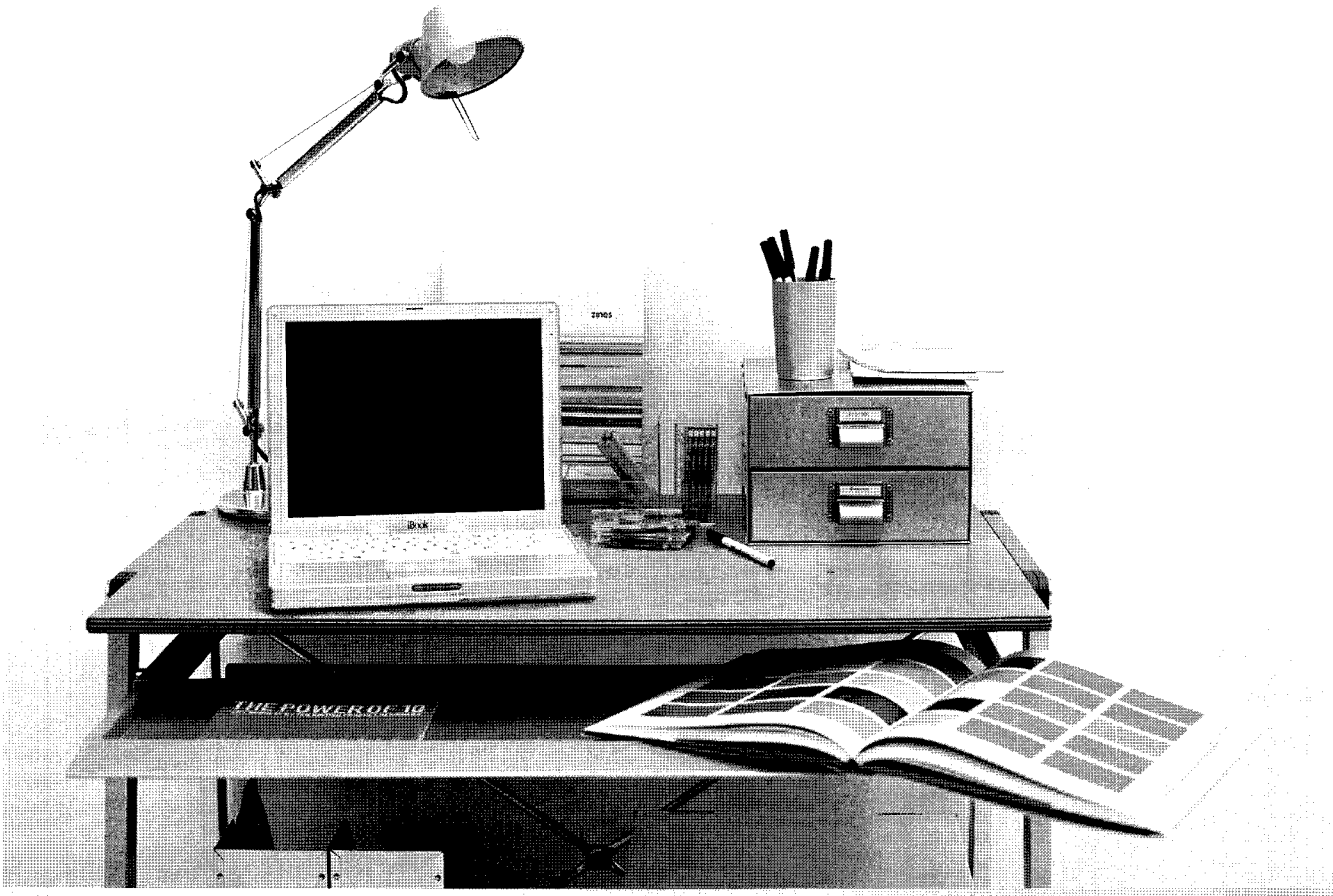

2009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www.kcca.or.kr

2009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 · 기구 · 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43	8479	89	적재기 또는 분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것
44	8442	30	결속기, 포장기 또는 튜빙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3.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 · 정렬 · 포장 · 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55	8441	10,80	절단기, 슬리터(Slitter), 파단분할기(Splitt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 할 수 있는 것 2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63	8439	20,30	골판지제조기 (Corrugator 또는 Corrugating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1.8미터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4	8439	30	오토스프라이서 (Auto Splic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투입되는 골판지 원지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7	8441	30	플렉소폴더스티처 (Flexo Folder Stitch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시 인쇄공정 및 봉함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최대 철박음 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8	8441	30	플렉소다이커터 (Flexo Die Cutt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상자 제조용의 것으로서 로터리타입은 급지면적이 2천400밀리미터×1천600밀리미터 이상이고, 평판타입은 급지면적이 1천600밀리미터×1천100밀리미터 이상이며, 인쇄기능이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9	8441	30	전분 자동제어장치 (Auto Glu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 전분접착제 제조용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천50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